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2024.3.12



여수시 조례 제2038호

붙임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038호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세 미만” 을 “7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속 직원” 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여수시 소속 공무원과 「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설치할 수 있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 제1항” 을 “법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5명 이상 10명” 을 “11명 이상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상 · 하반기” 를 “분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소속 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여수시 소속 공무원과 「여수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및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생 략)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7세 이하--- -----. 2. “소속 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여수시 소속 공무원과 「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p>제3조(설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직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p>	<p>제3조(설치) ----- ----- ----- ----- 설치하여야 한다.</p>
<p>제10조(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여수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p>제10조(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법 제25조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p>4. (생 략)</p> <p>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p> <p>② (생 략)</p> <p>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업무 담당공무원 등으로 한다. <후단 신설></p> <p>제14조(회의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상·하반기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p> <p>② ~ ④ (생 략)</p>	<p>7.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 11명 이상 15명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p> <p>제14조(회의 및 운영) ① ----- ----- 분기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